

1. 등기가 최소한도 존재는 해야만 그 경료된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
2.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제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3.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제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4.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가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
5.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
6.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 A지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7.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8.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9.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시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리자가 단독으로 전세권,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0. 민법 제191조에 따라 소유권과 지상권 등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을 때 지상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때 지상권말소등기를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1.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등기가 불법한 방법으로 말소가 되었다 해도 그 등기는 효력이 있어 말소회복등기의 형식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2. 등기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한 등기이다.
3. 모두생략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한 등기이다.
4. 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뿐이다.
6. A지 등기부는 필요 없으므로 폐쇄를 하고, 폐쇄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7. 등기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현행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8.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단독 신청한다.
9. 말소등기는 권리등기이므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신청 할 수 밖에 없다.
10. 5.9번과 동일